

[붙임 1]

※ 본 종합안내서는 2022년도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계획 공고문의 일부로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반드시 종합안내서의 내용을 확인하시고 시험에 임해야 합니다.
(내용을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수험생 본인의 귀책사유입니다.)



종합안내서



목 차

1. 제1회 경력경쟁임용시험 응시원서접수	1
<서식1> 응시원서	2
<서식2> 이력서	4
<서식3> 자기소개서	5
<서식4>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6
2. 기술계고 졸업(예정)자 경력경쟁임용시험	7
<서식5> 기술계고 졸업(예정)자 경력경쟁임용시험 추천현황표	10
<서식6> 기술계고 졸업(예정)자 경력경쟁임용시험 추천서	11
3. 연구사·지도사 경력경쟁임용시험	12
<서식7> 동일계통학과 추천서(연구사)	13
<서식8> 동일계통학과 추천서(지도사)	15
4. 구분모집 응시대상자(장애인·저소득층·보훈청추천)안내	17
5. 7급 공개경쟁임용시험 과목 대체	19
6. 장애인 등 편의지원 제공 안내	24
7. 양성평등 채용목표제	28
8. 가산점 관련 안내	29
[참고-신규임용시험 가산대상 자격증]	32~36

※ 서식은 [별첨] 서식모음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1. 제회 경력경쟁임용시험 응시원서접수

1. 제1회 경력경쟁임용시험 응시원서접수

□ 응시원서접수 개요

- 대 상 : 노동7급, 수의7급, 수의연구(수의)
- 접수기간 : 2022. 3. 2.(수) ~ 3. 4.(금) (09:00~18:00) ※ 점심시간은 제외(12:00~13:00)
- 응시수수료 : 7,000원(7급, 연구사)
※ 제1회 경력경쟁임용시험 응시수수료는 전라북도수입증지를 구입(전북도청 1층 민원봉사실) 하여 영수증으로 서류(응시원서 앞면 붙임)와 함께 제출
- 응시원서 제출방법 : 방문접수 또는 우편(등기)접수

※ 우편접수는 마감일 근무시간(18:00)까지 소인분에 한하여 유효함

- ▶ 주소 : (우54968)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총무과 공무원채용팀(민원봉사실 2층)
- ▶ 우편접수자의 경우 응시번호는 서류전형 발표 전까지 휴대폰 SMS로 통보 예정이며, 응시표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장에서 배부 (☎063-280-4219)
- ▶ 응시수수료 : 우체국을 방문하여 '통상환증서'(현금×)를 구입, 제출서류와 동봉 제출

□ 응시자 제출서류

① 응시원서(붙임 <서식1>, 자필기재) 1부.

- 응시원서에는 임용예정기관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며 중복접수 할 수 없습니다.
- 응시원서 접수 당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차상위계층이거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응시수수료가 면제됩니다.

※ 해당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확인서 또는 한부모가족 증명서 첨부

② 이력서(붙임 <서식 2>, 워드작성 및 자필서명 또는 인) 1부.

③ 자기소개서(붙임 <서식 3>, 워드작성 및 자필서명 또는 인) 1부.

④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붙임 <서식 4>, 워드작성 및 자필서명 또는 인) 1부.

⑤ 자격·면허증 사본 1부. (※ 원본지참 필수)

<서식 1>

응 시 원 서

본인은 2022년도 제1회 경력경쟁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의거 당해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2 년 월 일

전라북도인사위원회위원장 귀하

※응시번호		성명	(한글)
응시직급 (직 류)			(한자)
생년월일		복수국적 해당여부	
주 소	(우)		전라북도 수입증지 붙이는 곳 * 대한민국 수입인지 사용불가
전자우편			
전 화 (휴대전화)			



응 시 표 (2022년도 제1회 경력경쟁임용시험)

※응시번호		응시직급 (직 류)	
성명	(한글)	(한자)	
2022년 월 일 전라북도인사위원회위원장 (인)			

주 의 사 항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 기재여부와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시험당일은 응시표, 신분증을 지참하고 시험시작 30분전까지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합니다.

보완사항	를(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
------	-----------------------

응시원서 작성요령

※ 응시원서는 다음 요령에 의하여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1. 응시번호 : 기재하지 않음
2. 응시직급·직류 : 응시하고자 하는 모집단위의 직급 및 직류를 기재함
[예시 : 노동7급, 수의7급, 수의연구(수의)]
3. 임용예정기관 : 응시하고자 하는 기관을 기재함 (예시 : 전라북도, 전주시 등)
4. 주소 : 현재 거주하는 곳(우편물 수령 등)을 정확히 기재함
5. 성명·생년월일·전화(휴대전화) :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함
6. 전라북도수입증지 : 도청 1층 민원봉사실에서 응시수수료(7,000원)를 납부하여

받은 영수증을 응시원서 앞면에 붙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차상위계층이거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경우 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7. 본인의 자필로 작성함

<서식 2>

이 력 서

인적사항

임용예정기관	전라북도, 전주시	응시직류·직급	노동 7급, 수의7급, 수의연구(수의)
성명		생년월일	(만 세)
현주소			
현소속	기관 및 부서 :		직위 :
연락처		E-mail	

학력사항

	학위종류	전공	학위번호	학위취득(예정)일
학력 및 전공	학사 이상 기재			00년 00월
	학교명은 기재하지 않음			
논문, 저술, 償 등				

관련 면허·자격증

면허·자격증명	등록번호	취득(예정)일	시행기관

위에 기재된 사항은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22년 월 일

제출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서식 3>

자 기 소 개 서

응시직류·직급	임용예정기관	성 명	연락처
노동 7급, 수의7급, 연구사(수의)	전라북도, 전주시		

지원동기

성장과정 및 성격(장·단점)

특기 사항

인 생 관

기타사항

2022년 월 일

작 성 자 : (서명 또는 인)

※ 분량은 휴먼명조 12포인트로 A4용지 2매 이상 작성

※ 자기소개서 작성시 주의사항

- 자기소개서에는 본인에 관한 사항만 작성하는 것으로 본인 이외의 부모 및 친인척의 신상에 관한 내용(성명, 직장명, 직위, 근무처 등)을 기재하지 않아야 합니다.
- 자기소개서 작성 시 본 주의사항은 삭제 후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식 4>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전라북도인사위원회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아래 내용을 자세히 읽어 보시고, 모든 내용을 이해하신 후에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I.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귀하께서 제공한 모든 정보는 다음의 목적을 위해 활용하며, 아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① 개인정보 수집항목 및 수집·이용 목적

가) 수집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메일, 전화번호, 학력·경력사항, 자격·면허 소지사항

나) 수집 및 이용 목적

-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관련 자격·면허·경력 등 조회·확인(신원조사·신원조회 포함)

②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 달성할 때까지

③ 동의거부 권리

- 귀하께서는 본 안내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해서 동의를 거부하실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귀하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를 거부하시는 경우에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본인은 위의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였으며, 개인정보 수집, 이용하는 것에 동의하시겠습니까?
동의함 동의안함
2022년 월 일 성명 : (서명 또는 인)

II.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 ※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① 고유식별정보 수집 항목 및 수집·이용 목적

가) 수집항목

-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자격번호 등

나) 수집 및 이용목적

-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관련 자격·면허·경력 등 조회·확인(신원조사·신원조회 포함)

②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 달성할 때까지

③ 동의거부 권리

- 귀하께서는 본 안내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해서 동의를 거부하실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귀하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를 거부하시는 경우에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본인은 위의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였으며, 고유식별정보 수집, 이용하는 것에 동의하시겠습니까?
동의함 동의안함
2022년 월 일 성명 : (서명 또는 인)

**2. 기술계고 졸업(예정)자
경력경쟁 임용 시험**

2. 기술계고 졸업(예정)자 경력경쟁임용시험

□ 학교장 추천대상자 자격기준

① 추천대상자(고졸자)

- 전라북도 소재 기술계고 졸업(예정)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의 소지자
 - ▶ 기술계고를 졸업한 각급 대학 중퇴자도 포함하되, 해당여부는 시험시행 연도의 추천서 접수기간 마감일(6.30.) 기준
- ※ 추천대상자가 대학에 진학한 경우, 중퇴를 증명하는 서류를 확인 후 추천

② 추천학과

-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별표 9]의 ‘임용예정직렬과 전공학과 대비표’와 직접 관련되는 학과로서, 직류별 관련 학과는 「국가기술자격의 종목별 관련학과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12-49호)」 [별표 2]의 ‘중 직무분야-관련학과’의 학과 명칭을 기준으로 하되, 이와 직접 관련되는 학과도 포함할 수 있음

③ 학과성적 기준

- ① 전문교과 성취도가 평균 B등급 이상이고 ② 그 중 50% 이상의 과목에서 성취도가 A이며, ③ 보통교과의 평균 석차비율이 50% 이내이거나 평균 석차등급이 4.5 이내인 사람

⇒ ①+②+③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성취평가제 기준을 적용할수 없는 경우 아래기준 적용

- 졸업요건에 해당하는 학업과정 또는 학점을 이수·취득한 사람으로서 소학년 석차 비율이 이수 학과의 상위 50% 이내인 졸업(예정)자
- 학교장 추천대상자에게 성취평가제 기준이 적용되지 않은 경우 또는 자치단체에서 학과성적 기준으로 성취평가제 적용을 유예한 경우

④ 성적합산 기준

- (졸업자) 고등학교 소학년 성적 기준
- (졸업예정자) 고등학교 1~2학년 성적 기준
- ※ 고등학교 재학중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 실업계 고등학교로 전학한 경우, 재학생은 2학년, 졸업생은 3학년 관련학과 성적산출이 가능해야 하고, 인문계고 재학당시 보통교과도 학과 성적기준을 충족해야 함

□ 추천서 제출 및 원서접수 절차

① 원서접수 절차

절차	추천희망신청	추천서 접수	추천서 및 증빙 서류 검증	응시원서 접수
주요내용	추천희망신청 (별도양식없음)	해당학교로부터 추천서 및 증빙 서류 접수	추천 대상자의 선발직류 적합성 등 검증	이미 신청한 추천대상자만 인터넷원서접수
주체	응시희망자 → 해당학교	해당학교 → 전라북도청	전라북도청	응시자본인 → 인터넷원서접수

② 추천서 접수(해당학교→전라북도청)

1) 기 간 : 2022. 6. 27.(월) ~ 6. 30.(목) 09:00 ~ 18:00

2) 제출서류

- 추천현황표 1부<서식 5>
- 추천자 명단 1부 (별도서식없음)
- 추천서 각1부<서식 6>
- 성적증명서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상의 증명서]
- * 증명서발급이 어려울 경우, 평균석차비율 또는 평균석차등급 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 졸업증명서(졸업예정자는 졸업예정증명서나 재학·휴학증명서 등) 1부

③ 추천서 및 증빙서류 검증(전라북도청)

- 기 간 : 2022. 7. 12.(화) 까지

④ 응시원서 접수(응시자 본인)

- 접수방법 :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 접수
(인터넷 접수만 가능)
- 접수기간 : 2022. 7. 18.(월) ~ 7. 22.(금) 5일간 * 취소기간 : ~7.25. 18:00시까지
- 응시수수료 : 5,000원

※ 시험실시기관은 선발직류 적합성 유무, 관련학과 해당여부, 대학진학 여부 등에 대해 검증합니다.

- 학교장의 추천 및 적합성(교육청 협조) 등 검증된 사람만 응시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 추천학교에서는 대상자들이 인터넷 원서접수를 할 수 있도록 접수기간 및 방법 등을 안내하시기 바랍니다.

□ **임용예정 직렬(직류)과 전공학과 대비표**

직렬 (직류)	추천대상 학과
공 업 (일반기계)	【 기계, 자동차(자동차정비), 운전, 판금, 용접, 배관, 기관, 인쇄공업, 계량 】 과 직접 관련된 학과
공 업 (일반전기)	【 전기, 전자, 원자, 통신, 물리 】 와 직접 관련된 학과
농 업 (일반농업)	【 농업, 잠업, 연초, 제사, 원예, 특수재배, 농예, 농업경영, 농기계 】 와 직접 관련된 학과
보 건 (보 건)	【 위생, 임상병리, 방사선, 물리치료, 치기공, 보건, 의학, 치의학 】 과 직접 관련된 학과
시 설 (일반토목)	【 토목(토목건설, 목공), 농업토목 】 과 직접 관련된 학과
시 설 (건 축)	【 건축(건축설비) 】 와 직접 관련된 학과

<서식 5>

기술계고 졸업(예정)자 경력경쟁임용시험 추천현황표

1. 학교명 :

2. 추천자 현황

응시직렬 (직류)	성명 (생년월일)	전공과 학과	자격 종	선발예정직렬(류) 관련 전문교과 이수 현황*		성적			졸업 (예정) 일
				교과(군)	비율	보통교과**		전문교과	
						평균석차등급 (비율)	전과목 성취도 평균B이상 환산점수	성취도 A비율	
()	()								

* 선발예정직렬(류) 관련 전문교과 이수단위 비율 기재하되, 50% 이상 요건 충족사항은 2024년부터 적용

** 보통교과의 경우 평균석차등급과 평균석차비율 중 한 개만 기재하여도 됨

3. 직렬별 추천 현황

직렬	합계	공업			농업		녹지		해양수산			보건	시설		방 통 신
		일반 기계	일반 전기	일반 화공	일반 농업	축산	산림 자원	조경	일반 수산	선박 항해	선박 기관		토목	건축	
지원자수															
추천자수															

<서식 6>

기술계고 졸업(예정)자 경력경쟁임용시험 추천서

추천 직렬(직류)

인적사항	성 명	(한자:)	사 진 (반명함판, 6개월 이내 촬영)
	주민등록번호	-	
학력사항	출신학교		
	소 재 지		
	학과(정원)	학과(정원) 명)	
	졸업 여부	(졸업) 년 월/(졸업예정) 년 월	

학업성적	성취평가제 미적용	석차비율	상위 %(등/ 명)		
	성취평가제 적용	보통 교과	평균 석차등급	평균석차비율	상위 %(등/ 명)
		전문 교과	성취도 평균B이상	해당 () 미해당 ()	성취도 A 과목 비율

연 락 처	주 소			
	전화번호		핸드폰	
	e-mail			

- 위 사람은 **공고문상의 선발직렬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학과**의 졸업(예정)자임을 확인하며,
-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제8호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제1항제7호에 따라 경력 경쟁임용시험 대상자로 추천합니다.

2022년 월 일

고등학교 교장 (인)
전라북도인사위원회위원장 귀하

※ 추가 제출 서류

1. 성적증명서(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상의 증명서)
- 증명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 평균석차비율 또는 평균석차등급 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2. 졸업증명서(졸업예정자는 졸업예정증명서나 재학·휴학증명서 등으로 대체 가능)

3. 연구사 · 지도사 경력경쟁임용시험

3. 연구사·지도사 경력경쟁임용시험

- 연구사의 경우 '전공한 자'라 함은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전문대학 제외)에서 해당학 및 관련 계통의 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 포함)으로서 해당 총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 ※ '동등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은 대학교 비전공자도 대학원에서 해당학 및 동일계통학의 석·박사 학위를 취득한 자를 포함합니다.
- ☞ '22년 경력경쟁임용시험(보건·환경연구사) 학력제한 변경 : 관련계통학 학사 → 석사학위
- 지도사의 경우 '전문대학 이상 졸업자'이라 함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0조에 따라 농업계통(수의학 포함)의 교육과정을 2년 이상 이수한 사람과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다만, 관련 계통 대학에 편입한 자는 당해 관련 계통의 대학을 수료하거나 졸업한 자) 해당 총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 ※ 농업계통(수의학을 포함한다)의 전문대학 이상 졸업자
 - ※ 비농업계통의 전문대학이상의 졸업자가 농업계통 대학의 3학년에 편입 또는 대학원에 입학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학을 졸업 또는 대학원 과정을 수료하여야 함
- 해당 총장 명의로 발급한 추천서에 「우리대학(교)의 ○○학과는 2022년도 전라북도 지방 공무원 임용시험 계획 공고문에 기재되어 있는 ○○학과와 동일계통의 학과임을 증명함」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 관련계통의 학과 및 동일계통의 학과로 추천서를 받을 수 있는 지 원서접수 전 해당학교에 미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안내하는 서류접수 기간 내에 추천서를 제출한 사람에 한하여 '해당 총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으로 인정합니다.
- 연구사 및 지도사 경력경쟁임용시험의 추천서는 다음의 양식으로 합니다.

<서식 7>

동일계통학과 추천서 (연구사)

주 소				
성 명		생년월일		성 별
관 련 학과졸업 (해당분야만 작성)	대학(교)	학부	학과	년도 졸업(예정)
	대학교	대학원	전공	년도 졸업(석.박사)

1. 위 사람은 우리 대학(원)의 _____ 학과를 졸업(예정)한 자로서, 동 학과(위)는 2022년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계획 공고문에 기재되어 있는 _____ 학과(위)와 동일계통의 학과(위)임을 증명하며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제8호에 따라,
2. 전라북도인사위원회에서 공고한 2022년도 전라북도 제2회 경력경쟁임용시험의 (/)직렬/직류 응시대상 자격요건에 적합하므로 이에 추천합니다.

※ 학교연락처 : 담당자 ○○○ (전화 :)

발 급 자	
소 속	
직 위	
성 명	(인)

2022년 월 일

○○○○○ 총장 (직인)

붙임 졸업증명서 1부.

전라북도인사위원회위원장 귀하

[추천서 뒷면]

〈총장 추천 시 유의사항〉

- 추천 시에는 반드시 2022년도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계획 공고문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장 추천서는 2022년도 제2회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경력경쟁 임용시험 응시 희망자(필기시험 합격자)에게 필요한 서류입니다.
- 추천 시에는 이수과목 및 취득학점에 근거해서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특히 편입학생의 경우 이수과목 및 자격요건과 동등 학력이상의 학점 이수 여부를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 전공한 학과 명칭이 공고문상의 학과 명칭과 상이할 경우에는 『우리 대학(원)의 ○○○ 학과는 공고문에 기재된 ○○○학과와 동일계통의 학과임을 증명함』 문구를 필히 기재하여야 하며, 허위로 기재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추천서에는 추천 요구 학생 대학의 총장의 직인(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 본 추천서는 동일계통학과 증명서류로 함께 사용됩니다.
- 기타 추천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전북도청 총무과 공무원채용팀(☎063-280-2266, 4218, 4219)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식 8>

동일계통학과 추천서 (지도사)

주 소				
성 명		생년월일		성 별
관 련 학과졸업 (해당분야만 작성)	대학(교)	학부	학과	년도 졸업(예정)
	대학교	대학원	전공	년도 졸업(석.박사)

- 위 사람은 우리 대학(원)의 _____ 학과를 졸업(예정)한 자로서, 동 학과(위)는 2022년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계획 공고문에 기재되어 있는 _____ 학과(위)와 동일계통의 학과(위)임을 증명하며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제8호에 따라,
- 전라북도인사위원회에서 공고한 2022년도 전라북도 제4회 경력경쟁 임용시험의 (/)직렬/직류 응시대상 자격요건에 적합하므로 이에 추천합니다.

※ 학교연락처 : 담당자 ○○○ (전화 :)

발 급 자	
소 속	
직 위	
성 명	(인)

2022년 월 일

○○○○○ 총장 (직인)

붙임 졸업증명서 1부.

전라북도인사위원회위원장 귀하

[추천서 뒷면]

〈총장 추천 시 유의사항〉

- 추천 시에는 반드시 2022년도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계획 공고문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장 추천서는 2022년도 제4회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경력경쟁 임용시험 응시 희망자(필기시험 합격자)에게 필요한 서류입니다.
- 추천 시에는 이수과목 및 취득학점에 근거해서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특히 편입학생의 경우 이수과목 및 자격요건과 동등 학력이상의 학점 이수 여부를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 전공한 학과 명칭이 공고문상의 학과 명칭과 상이할 경우에는 『우리 대학(원)의 ○○○ 학과는 공고문에 기재된 ○○○학과와 동일계통의 학과임을 증명함』 문구를 필히 기재하여야 하며, 허위로 기재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추천서에는 추천 요구 학생 대학의 총장의 직인(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 본 추천서는 동일계통학과 증명서류로 함께 사용됩니다.
- 기타 추천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전북도청 총무과 공무원채용팀(☎063-280-2266, 4218, 4219)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안내
(장애인 · 저소득층 · 보훈청추천)

4.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안내

- ①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 의한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해당시험 응시원서 접수마감일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거나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유효하게 등록·결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 장애인 응시자는 행정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어야 합니다.
 - 필기시험 합격자는 장애인복지카드, 장애인 등록증, 국가유공자증 등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자격을 증명하는 증빙서류를 필기합격 발표 시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장애인은 장애인 구분모집 외에 다른 모집단위에도 비장애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 가능합니다.(단, 동일 날짜에 시행하는 임용시험의 중복접수는 불가능함)
 - 장애인 응시자 중 편의지원을 원하는 수험생은 장애인 등 편의지원 제공 안내문을 참고하여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정해진 기간 내에 **반드시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22년부터 장애인 채용 도 일괄 구분모집 시행 * 제3회 공개경쟁 임용시험
 - 임용기관별 장애인 채용 ⇨ 도 일괄 구분모집으로 채용

- ② 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기간의 시작은 급여 또는 지원을 신청한 날로 봄)이 응시원서 접수일 또는 접수마감일까지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사람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생계·주거·교육·의료급여 중 한 가지 이상의 급여를 받는 자)
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 단, 수급자 또는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합산하여(중간 공백없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경우도 응시 가능
- 응시자가 군복무(현역, 대체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이로 인하여 그 기간에 급여(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도 가구주가 그 기간에 계속하여 수급자(지원대상자)로 있었다면 응시자도 수급자(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봅니다.
(다만, 군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하는 기간 종료 후 2개월 내에 다시 수급자(지원대상자)로 신청 또는 결정된 경우에 한하여 기간의 계속성을 인정함)
※ 군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한 그 전·후 기간에 1인 가구 수급자(지원대상자)였다면, 군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한 기간 동안 수급자(지원대상자) 자격을 계속 유지하고 있었다고 봄(이 경우에도 군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하는 기간 종료 후 2개월 내에 다시 수급자(지원대상자)로 신청 또는 결정된 경우에 한하여 기간의 연속성을 인정함)
※ 단, 교환학생의 경우는 소속 학교에서 교환학생으로서 해외에 체류한 기간(교환학생 시작시점 및 종료시점)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필기시험 합격자는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장이 발급하는 수급자 증명서(수급기간 명시), 한부모가족증명서(지원기간 명시) 등 증빙서류를 필기시험 합격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저소득층은 저소득층 구분모집 외에 다른 모집단위에도 비저소득층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가능 합니다.(단, 동일 날짜에 시행하는 임용시험의 중복접수는 불가능함)
- ③ 보훈청 추천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50조 내지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보훈(지)청에서 추천하는 취업지원 대상자
- 해당 보훈(지)청에서 추천한 응시자는 별도로 해당 시험의 원서접수 기간 내에 반드시 인터넷으로 응시원서를 접수해야 합니다.

5. 7급 공개경쟁임용시험 과목 대체

5. 7급 공개경쟁임용시험 과목 대체

1 영어능력검정시험 대체 안내

○ 대상시험 및 기준점수

구분	토플(TOEFL)		토익 (TOEIC)	텡스(TEPS)		지텔프 (G-TELP)	플렉스 (FLEX)
	PBT	IBT		2018.5.12. 전 시험	2018.5.12. 이후 시험		
일반	530	71	700	625	340	65(level 2)	625
청각장애인	352	-	350	375	204	-	375

- 7급 공개경쟁임용시험의 제1차 시험 시행예정일부터 역산(逆算)하여 **5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 실시된 시험**으로서 제1차 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점수(등급)가 발표된 시험으로 한정하며, 기준점수가 확인된 시험만 인정함 * 2022년 제1차 시험 시행예정일 역산 계산 → 2017년 1월 1일 이후
- 자체 유효기간이 2년인 시험(TOEFL, TOEIC, TEPS, G-TELP)의 경우에는 **유효기간 만료 전에 성적을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s://local.gosi.go.kr>)에 사전등록해야 함** (단, 플렉스(FLEX)는 성적유효 기간이 경과되어도 조회 가능하기에 사전등록 불요)
 - 토익, 텡스, 지텔프 : 자체 성적유효기간 내 상시 등록 가능
 - 토플 : 자체 성적유효기간 내 매월 1일~10일 등록
- ※ 사전등록을 하지 않고 유효기간이 경과되어 진위여부 확인이 불가능한 성적은 인정되지 않음
- ※ 사전등록일 기준으로 각 시험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시험성적만 등록가능
- 해당 검정시험기관의 정규(정기)시험 성적만을 인정하고, 정부기관·민간회사·학교 등에서 승진·연수·입사·입학(졸업) 등의 특정목적으로 실시하는 수시·특별시험 등은 인정하지 않음
- 외국에서 응시한 TOEFL, 일본에서 응시한 TOEIC, 미국에서 응시한 G-TELP는 필기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점수(등급)가 발표된 시험으로 한정하고, 이 경우 공인영어성적표를 전북도청 총무과 공무원채용팀으로 등기우편 또는 방문 제출하여야 함.
- 청각장애 응시자의 경우 해당 영어능력검정시험에서 듣기부분을 제외한 점수가 기준 점수 이상이면 응시 가능함(2 참고)

2 영어능력검정시험 청각장애 대상 범위

1. 영어능력시험 듣기점수 제출 면제 대상 기준

- 해당 시험의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으며, 아래 기준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사람

※ 보청기 등 청력 교정을 위한 보장구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청력 기준임

- ① '양쪽 귀 청력 손실이 80dB 이상(기존 청각장애 2·3급)'인 사람
- ② '양쪽 귀 청력 손실 60dB 이상이고 어음(말소리) 분별력 50% 이하'인 사람(진단서 반드시 제출)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별표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청각장애인 (舊2·3급으로, 종전 듣기점수 제외 대상은 그대로 인정)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제3조의 기준에 해당하는 장애인 중 청각장애의 정도가 위의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장애인>

1.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거나,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의한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되어 유효하게 등록·결정된 자

2. 시험별 제출 점수 기준

- 7급 영어 기준점수

시 험 명	TOEFL(PBT)	TOEIC	TEPS		FLEX
			'18.5.12. 이전시험	'18.5.12. 이후시험	
7급 공개경쟁임용	352	350	375	204	375

3. 제출서류 등 안내

① (제출서류) 의사진단서*(의사 소견서 불인정)

* 해당 시험 원서접수 마감일부터 역산하여 2년이 되는 해의 1월1일부터 발급된 진단서만 인정

② (발급기관) 청력검사실과 청력검사기 등 청력 상태를 검진할 수 있는 시설을 보유하고, 이비인후과 전문의가 있는 병원

③ (의사진단서에 반드시 포함될 내용)

(가) 면제대상 판단 기준 검사방법 ☞ 예시표 표시 내용 ①

(나) 장애 정도 및 유형 등에 대한 구체적 진술 ☞ 예시표 표시 내용 ②

* 장애정도 판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09호)에 따라 검사

(다) 듣기점수 제출 제외 해당 여부 ☞ 예시표 표시 내용 ③

< 전문의 진단서 발급 내용 예시 >

상기인은

- ① 보건복지부 장애정도 판정기준에 따라 청력 손실과 어음(말소리) 분별력을 검사한 결과,
- ② 양쪽 귀 청력 손실이 60dB이상이며, 어음(말소리)분별력이 30%인 사람으로서
- ③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의 영어능력검정시험 듣기점수 제외 대상 기준에 해당합니다.

4. 신청방법 및 절차 안내

① (신청·제출 : 응시자 → 전라북도)

- 해당 시험 원서접수 시 듣기점수 적용 제외 대상임을 표시*하고, 유효한 기간 내에 있는 진단서를 별도 안내하는 기한까지 우편(등기)로 제출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청각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舊2·3급)으로 등록된 응시자는 진단서 제출 불필요

* 예 : (체크) 영어능력검정시험 듣기점수 적용 제외 대상

※ 유효한 기간 내의 진단서 원본을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주소는 원서접수 화면에서 별도 안내 예정)

② (대상 확인 : 전라북도 → 응시자)

- 진단서 내용을 토대로 듣기점수 적용 제외 대상인지 확인 후,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에게 한해 자료 보완 요청 등 추가 안내 예정

③ (인정기간) 듣기점수 적용 제외 대상으로 신청한 해당 시험에 한함

- 매 원서접수 시 듣기점수 적용 제외 대상임을 표시(신청)하되, 진단서는 최초 1회 제출하면 진단서 유효 기간 내의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 한해 추가 제출 불필요

5. 성적 제출 방법

- 응시자는 응시원서 접수시에 해당 영어능력검정시험명, 등록번호, 시험일자 및 점수 등을 정확히 표기해야 하며, 외국에서 응시한 시험은 반드시 여권상의 영문성명을 사용해야 합니다.

※ 응시원서 접수부터~필기시험 시행일 전날까지 발표된 성적은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s://local.gosi.go.kr>)를 통해 추가등록을 해야 합니다.

- 추가등록기간 : 2022. 10. 24.(월) ~ 10. 28.(금)

6. 유의사항 등 안내

- 영어능력검정시험 듣기점수 제외 기준과 관련해 허위 또는 거짓으로 검사를 실시하여 검사결과를 왜곡하거나,
- 의사 진단서 등을 위·변조한 경우에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향후 5년간 각종 공무원 채용 시험의 응시 자격이 정지됩니다.

3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대체 안내

- 기준점수(등급) : 한국사능력검정시험(국사편찬위원회) 2급 이상
- 인정범위
 - 7급 공개경쟁임용시험의 제1차 시험 시행예정일부터 역산(逆算)하여 **5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 실시된 시험**으로서 제1차 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점수(등급)가 발표된 시험으로 한정하며, 기준점수가 확인된 시험만 인정함 * 2022년 제1차 시험 시행예정일 역산 계산 → 2017년 1월1일 이후
 - 국사편찬위원회의 정규(정기)시험 성적만을 인정하며, 정부기관·민간회사·학교 등에서 승진·연수·입사·입학(졸업) 등의 특정목적으로 실시하는 수시·특별시험의 성적은 인정하지 않음
- 성적등록 및 확인방법
 - 응시원서 접수 시 시험일자·인증번호·인증등급 등 입력
 - * 필요 시 진위확인을 위해 성적표 원본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음
 - 영어능력검정시험과 달리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은 자체 유효기간이 없기에 **사전등록 불필요**
- ※ 응시원서 접수부터 필기시험 시행일 전날까지 발표된 성적은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s://local.gosi.go.kr>)를 통해 추가등록을 해야 합니다.
 - 추가등록기간 : 2022. 10. 24.(월) ~ 10. 28.(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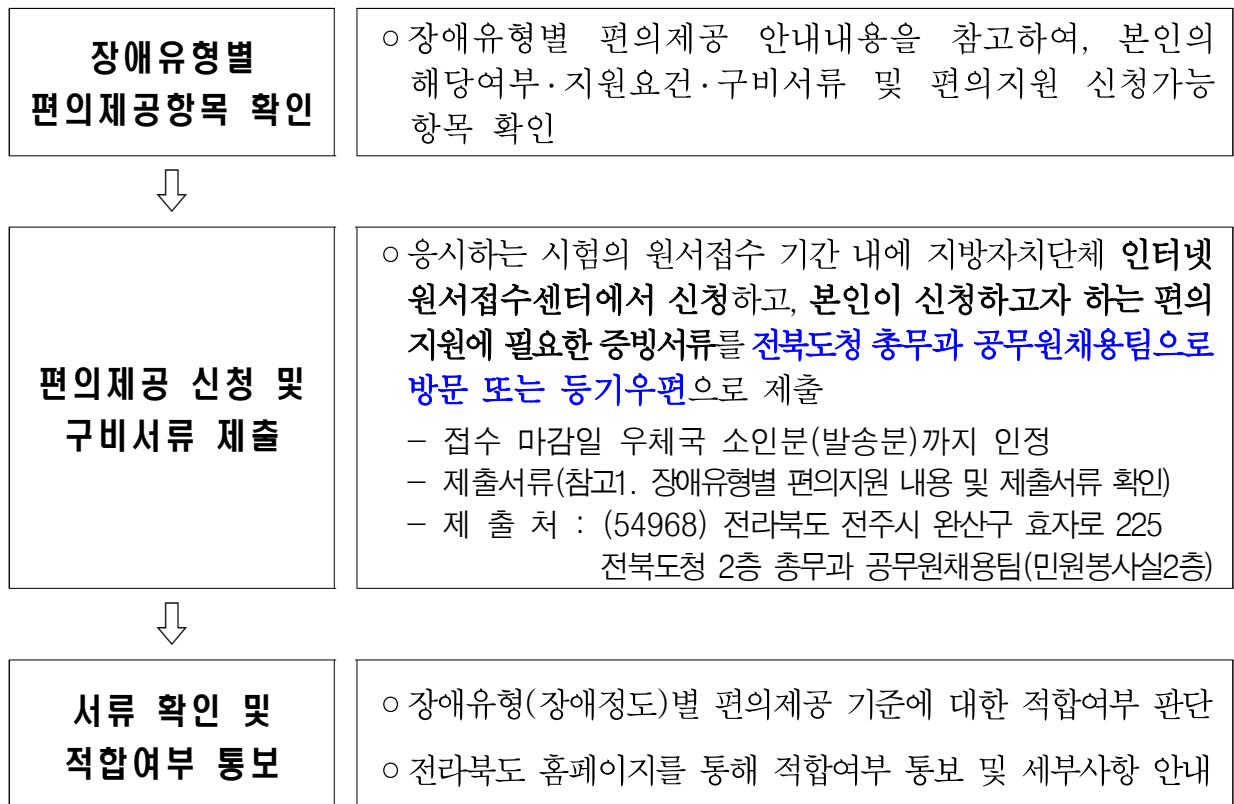
6. 장애인 등 편의지원 제공 안내

6. 장애인 등 편의지원 제공 안내

□ 편의지원 제공 대상

- 2022년도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 응시원서를 접수한 사람 중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까지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의한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거나,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상이등급의 구분 등) 제3항에 의한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되어 유효하게 등록·결정된 사람으로서
 - 시각·지체·뇌병변·청각장애 등 외부 신체장애로 인해 시험응시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사람
- 기타 특수·중복장애, 일시적 장애, 시험 응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사람
- 임신부, 과민성대장·방광증후군 환자 등 편의지원 제공이 필요한 사람

□ 편의지원 신청절차



□ 편의지원 제공 신청 시 유의사항

- 장애유형별 편의지원 내용(참고1)을 사전에 반드시 숙지하여 본인의 해당여부·지원요건·구비서류 및 편의지원 신청가능 항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상이등급자인 경우 「장애인복지법」의 장애정도표를 기준으로 본인이 어떤 장애유형과 등급에 해당되는지 참고한 후 [참고1] 장애유형별 편의지원 내용 및 증빙서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진단서 및 소견서에 해당 장애유형과 등급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 시험시간 연장 편의지원은 장애인 구분모집 단위에만 신청 가능합니다.
- 의사소견서 및 의사진단서에는 장애로 인한 해당 편의제공 내용의 필요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의한 종합병원(또는 상급종합병원)에서 발급한 것으로 전문의의 면허번호와 서명이 있어야 합니다.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 2년 이내 발급 받은 원본만 인정)
 - ※ 해당지역의 종합병원(또는 상급종합병원) 여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 ⇒ [병원약국 찾기]를 클릭하여 조회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병원 확인 후 발급)
- 2021년도 이후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편의지원을 받은 응시생은 동일한 편의 지원을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증빙서류를 면제합니다.(단,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 신청은 다시해야 함)
 - ※ 다만, 제출했던 서류의 발급일이 당해 시험의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2년이 경과한 경우, 증빙서류를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 해당서류 발급일이 원서접수 마감일로부터 2년 이내의 것이어야 함
- 전라북도 자체출제 과목이 포함된 직렬(직류)에서는 일부 편의지원(음성, 점자 등)이 제한됩니다.
 - ※ 점자문제지 및 음성지원 컴퓨터는 인사혁신처 위탁출제 과목에 한하여 제공 가능함
(점자문제지는 '17. 3. 28. 개정된 「한국 점자 규정」(문화체육관광고시 제2017-15호 반영)
- 시험 진행 일정상 별도의 보완기간이 없으므로 의문사항은 반드시 사전에 전북도청 총무과 공무원채용팀(063-280-2266, 4218, 4219)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1

장애유형별 편의지원 내용 및 제출서류

장애유형 및 정도		필기시험		비고	
		편의지원 내용	증빙서류(각각부)		
지체장애	상지	공통	· 확대문제지, 확대답안지 · 보조공학기 지참 허용 · 별도시험실 배정(좌석간격 조정)	-	
		장애정도가 심한 사람	· 시험시간 연장선택형 1.5배) · 답안지 대필	-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사람	· 공통 편의지원 내용만 신청가능	-		
하지	장애정도가 심한 사람 / 심하지 않은 사람	· 휠체어 전용책상(휠체어 사용자) · 별도시험실 배정(좌석간격 조정)	-		
뇌병변장애	공통		· 확대문제지, 확대답안지 보조공학기 지참 허용 · 휠체어 전용책상(휠체어 사용자) · 별도시험실 배정(좌석간격 조정)	-	
	장애정도가 심한 사람		· 시험시간 연장선택형 1.5배) · 답안지 대필	-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자 중 시간연장 필요성을 인정받은 사람		· 의사 진단서 (원본)	기존 1~3급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사람		· 공통 편의지원 내용만 신청가능	-	
시각장애	공통		· 확대문제지, 확대답안지 보조공학기 지참 허용	-	
	장애정도가 심한 사람	좋은 눈의 시력이 0.04이하인 사람	· 시험시간 연장선택형 1.7배) · 음성지원컴퓨터	의사 진단서 (원본)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이하로 남은 사람 중 점자사용 필요성을 인정받은 사람	· 점자문제지, 점자답안지(점자정보단말기 사용자) · 축소문제지(확대독서기 사용자)		기존 1~2급
		좋은 눈의 시력이 0.06이하이거나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이하로 남은 사람	· 시험시간 연장선택형 1.5배)	-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사람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중 점자사용 필요성을 인정받은 사람	· 시험시간 연장선택형 1.7배) · 음성지원컴퓨터 · 점자문제지, 점자답안지(점자정보단말기 사용자) · 축소문제지(확대독서기 사용자)	의사 진단서 (원본)	기존 3급 2호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 시험시간 연장선택형 1.5배)	-	기존 3급 1,2호
		좋은 눈의 시력이 0.20이하인 사람	-	-	기존 4급 2호
		나쁜 눈의 시력이 0.02이하이고, 좋은 눈의 교정시력이 0.3이하인 사람	· 시험시간 연장선택형 1.5배)	의사 진단서 (원본)	기존 4.5급 1호
	위 조건 외의 시각장애인		· 공통 편의지원 내용만 신청가능	-	기존 6급 중 좋은 눈 시력 0.30이하
	청각장애	장애정도가 심한 사람 / 심하지 않은 사람	· 수화통역사 배치 · 응시요령 등 서면자료 제공 · 보조공학기 지참 허용	-	기존 5급 2호, 6급
기타	특수 및 중복장애일시적 신체장애		· 장애정도를 검토하여 결정	검토 후 안내	
	임신부		· 높낮이조절책상 · 시험중화장실 사용 · 별도시험실 배정(좌석간격 조정)	의사 소견서 또는 임신사실확인서(원본)	
	과민성 대장·방광증후군		· 시험중화장실 사용 · 별도시험실 배정(좌석간격 조정)	의사 진단서(원본)	

* 확대문제지: A3 규격의 118%(14point), 150%(18point)로 확대된 2종류 중 택1
 * 확대답안지: A3 규격의 표기형
 * 축소문제지: A4 규격의 82%(10point)로 축소된 문제지로 확대독서기 사용자에게 한하여 신청

※ 상이등급자인 경우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상의 장애등급표를 기준으로 본인이 어떤 장애유형과 등급에 해당하는지 확인

참고 2 의사진단서(소견서) 발급 시 유의사항

- 발급기관 : 「의료법」 제3조에 의한 종합병원(또는 상급종합병원)
 - ※ 다만, 임신부의 경우 「의료법」 제3조에 의한 의원급 의료기관 및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의견 소견서나 임신사실확인서도 인정됩니다.
 - ※ 반드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의 [병원·약국찾기] 서비스에서 조회 후 해당 되는 병원에서 발급해야 하며 전문의의 면허번호와 서명(날인)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 발급일자 : 해당 시험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기준 2년 이내 발급(원본)
- 의사진단서(소견서) 발급 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 (아래 3가지)
 - 장애유형 및 정도에 대한 구체적 진술 * 시각장애의 경우, 시력 또는/ 및 시야각 명기
 - 장애로 인한 시험 응시 시 불편사항
 - 제공받고자 하는 편의지원 항목에 대한 필요성 인정 여부
 - 장애유형 및 정도에 따른 편의지원 신청가능 내용을 참조하여 제공받고자 하는 내용을 모두 기재

예시) 시험시간 연장, 음성지원컴퓨터, 점자문제지를 신청할 경우

⇒ 편의지원 필요성 인정내역 : 시험시간 연장, 음성지원컴퓨터, 점자문제지

- 원서접수 시 신청한 내용과 의사진단서(소견서) 기재 내용이 다를 경우 의사진단서(소견서)에 의함

< 의사진단서(소견서) 발급 내용 예시 >

장애유형 및 정도		예 시	※ ① ~ ③ 반드시 기재
시각장애	장애정도가 심한 자	① 장애유형 및 정도 : 시각장애 정도가 심한 자 - 시력/시야 : 좋은 눈 0.07,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이하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자	① 장애유형 및 정도 : 시각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자 - 시력 : 나쁜 눈 0.02이하, 좋은 눈 교정시력 0.30이하	
뇌병변장애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자	① 장애유형 및 정도 : 뇌병변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자 - 증상 : 상지의 수의적 근육조절능력 손상	
		② 시험관련 불편사항 : 시험 시 문제 필기속도가 느리고 미세한 글씨쓰기 및 답안 마킹이 어려움	
		③ 편의지원 필요성 인정내역 : 시험시간 연장	
기타	-	① 장애유형 및 정도 : 특수 및 중복장애 보유자 - 증상 : 편안 약시와 無수정체안으로 인한 눈의 운동장애 등	
		② 시험관련 불편사항 : 시험 시 문제 판독이나 일반 답안지 마킹이 어려움	
		③ 편의지원 필요성 인정내역 : 시험시간 연장(단, 장애판정을 받은 자에 한함)	

※ 시험시간 연장, 대필 등을 신청하는 경우 반드시 종합병원(또는 상급종합병원) 의사진단서 제출(소견서 불인정)

7. 양성평등 채용목표제

7. 양성평등 채용목표제

① 대상시험 : 양성평등채용목표제는 다음의 시험 중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인 시험 단위 대상**
(경력경쟁임용시험은 해당하지 않음)

※ 시간선택제는 선발예정인원이 10명 이상인 시험단위를 대상으로 함

- 7급 공개경쟁임용시험, 8·9급 공개경쟁임용시험, 지방연구사·지도사 공개경쟁임용시험

② 채용목표 : **30%**(시험실시단위별 임용목표인원은 시험실시 단계별 합격예정인원에 30%를
곱한 인원수로 함)

○ 시험실시 단계별로 합격예정인원에 대한 목표 비율이며, 인원수 계산 시 임용
인원이 10명 이상인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하며, 5명 이상 10명 미만일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는 버립니다.

○ 어느 한 성(性)의 합격자가 임용목표 비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하고, 전 과목 평균득점이 합격선에서 -3점(총득점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에는 과목수에 -3점을 곱한 점수) 이상인 해당 성(性)의 응시자 중에서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목표미달인원(목표인원-합격선 이상의 해당 성(性)합격자)만큼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합격 처리합니다.

○ 임용목표 인원 미달하는 인원만큼 해당 성(性)의 응시자가 추가 합격하는 것
으로 합격선 안에 있는 다른 성(性)의 합격자가 탈락되는 것은 아닙니다.

※ 자세한 사항은 「지방공무원 균형인사 운영지침(행정안전부 예규)」참고

8. 가산점 관련 안내

8. 가산점 관련 안내

□ 가산점 대상자 및 가산비율표

구 분		가산비율	비 고
취업지원대상자 (연구사, 지도직 포함) <small>*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별표8)-개정 2020.12.1</small>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10%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과 의사상자 등 가점은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적용 · 취업지원대상자(또는 의사상자 등) 가점과 자격증 가산점은 각각 적용 · 자격증 가산점은 1개만 인정 (직렬별 가산점) ·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항목 참고
의사상자 등 (의사자 유족, 의사자 본인 및 가족)		과목별 만점의 3% 또는 5%	
자격증 소지자	직렬(류)별 가산점	과목별 만점의 3% 또는 5% (1개의 자격증만 인정)	

① 취업지원 대상자

-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요건을 갖춘자에 한합니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그리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은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자에 대하여 각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10%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시험단위(직급·직류·임용기관)별로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직급·직류·임용기관별로 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 가점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직접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지)청 등 (보훈상담센터 ☎ 1577-0606)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 연구사·지도사 응시자도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이 적용됨('20. 12. 1)

② 의사상자 등

-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요건을 갖춘자에 한합니다.
- 「지방공무원법」 제34조의2 제1항 제2·3호에 의한 대상자는 각 과목별 만점의 40% 이상 득점자에 대하여 각 과목별 만점의 3% 또는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 의사상자 등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시험단위(직급·직류·임용기관)별 선발예정인원의 1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직급·직류·임용기관별로 선발예정인원이 9명 이하인 경우 가점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의사상자 등록여부와 가점 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 (☎ 044-202-3255) 또는 해당 시·군 사회복지 담당부서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③ 자격증 소지자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

가. 직류별로 적용되는 가산점

1) 행정직군 및 기술직군(보건·의료기술·식품위생직렬을 말한다)의 직급별 자격증 가산비율

- 다음 직류의 응시자가 직류별 해당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을 경우,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사람에 대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직렬(직류)	직급	대상자격증	가산비율
행정(일반행정)	7·9급	변호사, 변리사	5%
세무(지방세)	9급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사회복지(사회복지)	9급	변호사	
보건(보건)	9급	임상심리사 1·2급	

2) 기술직군(연구·지도직 포함)의 가산비율

- 국가기술자격법령 또는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 소지자가 해당 분야에 응시할 경우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사람에 대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구분	7 급, 연구사, 지도사		8·9 급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가산비율	5%	3%	5%	3%

※ P. 32.~36. 신규임용시험 가산대상 자격증(직류별 적용 가산점 자격증 일람표)

3) 직류별로 적용되는 가산점 적용 제외 직류

- 자격·면허증 소지자로 응시자격을 제한하는 직류
 - 제1회 경력경쟁임용시험 : 노동7급, 수의7급, 연구사(수의)
 - 제2회 공개(경력)경쟁임용시험 : 의료기술, 일반기계, 일반전기, 선박기관, 일반환경, 통신기술, 운전

※ 해당분야의 자격·면허 소지자로서 응시자격을 제한하는 경우 가산점 적용 제외

□ 가산점 관련 유의사항

- 2022년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서 가산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반드시 원서접수부터 필기시험 전일까지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에 자격증의 종류 및 자격번호를 입력**하여야 합니다.(OCR 답안지에는 가산점 표기란 없음)
- ※ 취업지원대상자 및 의사상자의 경우는 가산비율과 보훈번호 및 의사상자 증서번호를 입력하여야 합니다.
- 가산점 합산 관련
 - ① 취업지원대상자 (10% 또는 5%) 및 의사상자 가산점(5% 또는 3%)
 - ② 자격증 (직렬(류)별 적용) 가산점 (5% 또는 3%)
 - 응시자가 보유한 ①, ②의 가산점을 각각 하나씩 합산하여(①+②) 적용합니다.
 - ①, ②의 분류 내에서 가산점이 중복될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가산점 하나만 적용됩니다.
- 해당 기간 내 가산자격을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에 정상등록하지 않았거나 자격증 종류, 자격번호, 보훈번호 등을 잘못 입력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귀책사유임을 알려드립니다.

참고

신규임용시험 가산대상 자격증

○ 6급이하 일반직공무원

직 렬	직 류	국가기술훈격법에 따른 자격증	기타 법령에 따른 자격증
행정	일반행정	-	번호사 변리사
세무	지방세	-	번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사회복지	사회복지	-	번호사
공업	일반기계	<p>기술사 : 기계,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공장관리, 품질관리, 소방</p> <p>기능장 : 기계가공, 에너지관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판금제관, 배관</p> <p>기사 :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에너지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기계분야)</p> <p>산업기사 : 컴퓨터응용가공, 기계조립,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철도차량,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업기계, 배관, 산업안전, 품질경영, 영사, 승강기, 소방설비(기계)</p> <p>기능사 : 컴퓨터응용선반, 연삭, 컴퓨터응용밀링, 기계가공조립, 생산자동화, 전산응용기계제도, 공유압,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자동차차체수리, 건설기계정비, 양화장치운전, 궤도장비정비, 정밀측정, 용접, 특수용접, 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기계정비, 농기계운전, 배관, 동력기계정비, 영사, 승강기</p>	
	일반전기	<p>기술사 : 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전기안전, 품질관리, 소방</p> <p>기능장 : 전기</p> <p>기사 :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승강기, 품질경영, 소방설비(전기분야)</p> <p>산업기사 :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전기분야)</p> <p>기능사 : 전기, 철도전기신호, 승강기</p>	
	일반화학	<p>기술사 : 화공, 세라믹, 화공안전, 가스, 품질관리, 식품</p> <p>기능장 : 위험물, 가스</p> <p>기사 : 화약류제조, 화공,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화학분석</p> <p>산업기사 : 화약류제조, 위험물,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p> <p>기능사 : 화학분석, 위험물, 가스</p>	

아름다운 山河 응비하는 생명의 삶터, 천년전복!

직 렬	직 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기타 법령에 따른 자격증
농 업	일반농업	기술 사 : 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기 사 :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토양환경, 식품, 바이오화학 제품제조, 유기농업, 화훼장식 산업기사 : 종자,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식품, 유기농업, 화훼장식 기 능 사 : 종자, 원예, 버섯종균, 식품가공, 유기농업, 화훼장식	기능사자격증 가산비율적용: 농산물품질관리사
	축 산	기술 사 : 축산, 식품 기 사 : 축산, 식품 산업기사 : 축산, 식품 기 능 사 : 축산, 식품 축산, 식육처리, 식품가공	기사자격증 가산비율적용: 수의사, 방사성 동위원소취급자 (일반), 방사선 취급감독자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가축인공수정사
녹 지	산림자원	기술 사 : 조경, 종자, 산림, 농화학 기 사 : 산림, 조경, 종자,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산업기사 : 조경, 종자, 산림, 식물보호, 임산가공 기 능 사 : 조경, 종자, 산림, 임업종묘, 임산가공	
	조 경	기술 사 : 조경, 자연환경관리, 산림, 시설원예 기 사 : 조경, 자연생태복원, 산림, 시설원예, 식물보호 산업기사 : 조경, 자연생태복원, 산림, 식물보호 기 능 사 : 조경, 산림	
	일반수산	기술 사 : 해양,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수질관리, 식품 기 사 :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수산양식, 어업생산 산업기사 : 관리, 수산제조, 수질환경, 식품 기 능 사 : 해양조사, 수산양식, 어로, 수질환경, 식품 수산양식, 식품가공	기능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수산물품질관리사

아름다운 山河 응비하는 생명의 삶터, 천년전복!

직 렬	직 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기타 법령에 따른 자격증
보 건	보 건	기술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방사선관리, 광해방지, 인간공학 기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광해방지, 인간공학 산업기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기능사 : 식품가공 임상심리사1급(5%) 임상심리사2급(5%)	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의사, 한의사, 치과 의사, 수의사, 약사, 한약사, 방사성동위원소 취급자(특수, 일반), 방사선 취급감독자, 응급구조사 1급, 보건교육사 1급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임상병리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방사선사, 간호사, 조산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작업치료사, 위생사, 영양사, 응급구조사2급, 보건교육사2급 기능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보건교육사3급
	방 역		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의사, 수의사, 약사, 응급구조사 1급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임상병리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간호사, 위생사, 응급구조사 2급
환 경	일반환경	기술사 : 화공,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조경, 산림, 농화학, 해양, 화공안전,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지질 및 지반, 폐기물처리, 자연환경관리, 토양환경, 방사선관리, 기상예보, 광해방지 기사 : 화공, 조경, 산림, 식물보호, 토양환경, 해양환경,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응용지질,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생물분류, 기상, 광해방지 산업기사 : 조경, 산림,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해양조사,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기능사 : 조경, 산림, 환경, 유독물취급기능사(1999.3.27이전 취득)	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의사, 약사, 수의사, 환경측정분석사(대기·수질)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위생사

아름다운 山河 응비하는 생명의 삶터, 천년전북!

직 렬	직 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기타 법령에 따른 자격증
시 설	일반토목	<p>기술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p> <p>기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방재</p> <p>산업기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p> <p>기능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p>	
	건축	<p>기술사 : 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설안전, 소방</p> <p>기능장 :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p> <p>기사 : 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p> <p>산업기사 :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목공, 방수,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p> <p>기능사 : 전산응용건축제도, 타일, 미장, 조적, 온수온돌,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거푸집, 금속재창호, 건축도장, 철근, 방수, 실내건축, 플라스틱창호</p>	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건축사
방재안전	방재안전	<p>기술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p> <p>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p> <p>기능장 :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p> <p>기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건축설비, 건축, 방재</p> <p>산업기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설안전, 교통,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목공</p> <p>기능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전산응용토목제도, 전산응용건축제도</p>	

○ 연구·지도직 공무원

직 렬	직 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기타 법령에 따른 자격증
농업연구	작 물	기 술 사 : 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기 사 :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토양환경, 식품,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유기농업, 화훼장식	
농촌지도	농 업	산업기사 : 종자,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식품, 유기농업	
농업연구	원 예	기 술 사 : 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조경, 식품 기 사 :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토양환경, 조경, 식품,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유기농업, 화훼장식	
농촌지도		산업기사 : 종자,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조경, 식품, 유기농업	
농촌지도	축 산	기 술 사 : 축산, 식품 기 사 : 축산, 식품 산업기사 : 축산, 식품	기사 자격증 가산 비율적용 : 수의사, 방사성동위원소 취급 급자(일반), 방사선 취급감독자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가축 인공수정사
녹지연구	임 업	기 술 사 : 조경, 종자, 산림, 농화학 기 사 : 조경, 종자,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산업기사 : 조경, 종자, 산림, 식물보호, 임산가공	
해양수산 연구	수산양식	기 술 사 : 수산양식, 수질관리 기 사 : 수산양식, 수질환경,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산업기사 : 수산양식, 수질환경	
환경연구	환 경	기 술 사 : 화공,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조경, 산림, 농화학, 해양, 화 공안전,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지 질 및 지반, 폐기물처리, 자연환경관리, 토양환경, 방사선 관리, 기상예보, 광해방지 기 사 : 화공, 조경, 산림, 식물보호, 해양환경, 산업위생관리, 대 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응용지질, 폐기물처리, 자연 생태복원, 생물분류, 토양환경, 기상, 광해방지 산업기사 : 조경, 산림,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해양조사, 산업 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의사, 약사, 수 의사, 환경측정분석사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 비율적용 : 위생사

비고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한다.